

대전고등법원 2024. 9. 4 선고 2023나1035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 2024. 9. 4 선고 2023나10359 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2. 12. 21 선고 2021가합153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1. A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2. B

피고, 피항소인 3. C

피고, 항소인 4. D

피고, 항소인 5.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아이 담당변호사 이승훈, 정지은

변론 종결 2024. 7. 3.

판결 선고 2024. 9. 4.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2. 12. 21. 선고 2021가합1537 판결

주문

1. 원고가 피고 A, B, D, E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A, B, D, E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A과 F 사이에 2019. 8. 14. 체결된 4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A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B과 F 사이에 2019. 8. 16. 체결된 16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 D과 F 사이에 2019. 8. 14. 체결된 67,6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D은 원고에게 6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피고 E와 F 사이에 2019. 8. 29. 체결된 3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E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마.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 및 피고 C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A, D, E 사이에 생긴 항소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항소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항소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1. 피고 A, D, E에 대하여

주문 제1항의 가, 다, 라항 기재와 같다(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를 확장한 것은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명시적으로 부대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부대항소와 관련된 당사자표시나 부대항소취지의 기재는 생략한다).

2. 피고 B에 대하여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B와 F 사이에 2019. 8. 16. 및 2019. 8. 21. 체결된 31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를 확장하였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G와 F 사이에 2019. 8. 14. 체결된 1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주위적 청구 중 15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에 이르러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원고가 160,000,000원 부분에 관한 예비적 청구로 2024. 7. 3. 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에 기재한 부분은 주위적 청구를 양적으로 일부 감축한 것에 불과하여 주위적 청구에 흡수되는 것일 뿐 소송상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다).

3.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C와 F 사이에 2019. 8. 16. 체결된 1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1. 원고

가. 제1심 판결 중 피고 B, C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나. 주위적으로, 피고 B와 F 사이에 2019. 8. 21. 체결된 1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G와 F 사이에 2019. 8. 14. 체결된 1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 C와 F 사이에 2019. 8. 16. 체결된 1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A, B, D, E

제1심 판결 중 피고 A, B, D, E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3쪽 제2행 마지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 A은 이 법원에 이르러 그 대여 경위에 대하여 F의 배우자인 H가 I공판장 앞 논산시 J 대 2,020m²를 임의경매로 매수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으로 3,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고, 2012. 3. 6. 3,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교부하였으나 매매대금 지급일이 2012. 3. 21.이므로 F가 수표를 돌려주어 2012. 3. 14. 자신의 계좌에 입금했다가 2012. 3. 21. 다시 수표로 인출하여 F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 A이 2012. 3. 6.이나 2012. 3. 21. 인출한 수표들을 F에게 교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토지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잔금 지급일

이전에 금원을 차용하였다면 스스로 보관하고 있다가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짧은 기간 동안 F가 차용한 돈을 피고 A에게 돌려주었다가 매매대금 지급일에 다시 대여하였다는 피고 A의 주장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 제1심 판결문 제24쪽 마지막행부터 제25쪽 제13행의 '구체적 경위도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러나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1. 1. 6.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1억 원을 제외하고는 피고 B이 해당 금액을 해당 일시에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만 확인할 뿐, 그 현금이 F에게 지급 또는 교부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 B과 F와 사이에 차용증 같은 처분문서가 작성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대여 후 약 5~9년이 지날 때까지 F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적이 있다거나 F에게 변제를 요구 또는 독촉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그동안 둘 사이에 어떤 금전대차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대화내역 등과 같은 증거조차 없다. 피고 B은 F가 명절 등 대목 때나 I공판장에서 판매할 물품의 구매대금이 부족할 때마다 현금으로 대여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아래 표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돈들이 F에게 교부되었다거나 그 돈으로 I공판장에서 판매할 물품을 구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B이 F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26, 27쪽 표의 순번 2 '항목별 구체적 판단 이유'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을 제4호증의 3, 제10호증의 1, 제24호증의 2, 제2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11. 1. 6. 자신의 K은행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하면서 K은행 발행의 수표(수표번호 L)를 교부받은 사실, F가 2011. 1. 7. 위 수표(수표번호 L)를 자신의 양촌우체국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수표 1억 원을 F에게 교부하였고, F가 이를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보여 위 1억 원은 피고 B이 F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F가 피고 B에게 교부한 돈 중 1억 원을 차용금에 대한 변제라고 보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 C 계좌에 입금된 1억 5,000만 원은 F가 피고 B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 B이 F로부터 사해행위로 증여받은 돈은 총 2억 1,000만 원(= F로부터 교부받은 돈 3억 1,000만 원 - 위 1억 원)인바, F가 피고 B에게 직접 증여하여 취소 및 원상회복이 인정되는 1억 6,000만 원은 이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1억 6,000만 원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용함이 타당하다.』

○ 제1심 판결문 제29쪽 밑에서부터 제2행의 '그러나'부터 제30쪽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러나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2008. 8. 29. 1,000만원과 2012. 2. 28. 2,000만 원을 G가 F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에 더하여 G가 F와 차용증 같은 처분문서를 작성하거나 받지도 않은 점, 대여 후 약 7~11년이 지날 때까지 F로부터 이자를 지급받거나 F에게 변제를 요구 또는 독촉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그동안 둘 사이에 어떤 금전대차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대화내역 등과 같은 증거조차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앞서 피고 A, B 주장에 대해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F가 2019. 8. 14. G에게 위 차용금 3,000만 원(= 1,000만 원 + 2,000만 원)의 변제로서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F가 일부 피고들에게 금전을 증여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친인 G에게도 일정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7. 3. 8. G가 주식회사 M에 입금한 5,000만 원은 G가 F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위 1억 5,000만 원 중 적어도 5,000만 원은 F의 G에 대한 변제로 평가할 수도 있어 더더욱 이를 피고 B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30, 31쪽 표의 순번 3 '항목별 구체적인 판단 이유'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을 제6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2017. 2. 6. 신규 개설된 주식회사 M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2017. 3. 8. G 명의로 5,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주식회사 M는 F의 일인 회사인바, G가 주식회사 M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F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F가 G 계좌로 송금한 1억 5,000만 원 중 최소 5,000만 원은 F가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31쪽 밑에서부터 제3행 'G가'부터 제32쪽 제1행 '보이는 이상,' 부분을 'F가 G에게 송금한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G와의 거래관계로 인한 것이고, 나머지 돈은 G에게 증여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이상,'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3쪽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예비적 청구로 1억 5,000만 원을 F가 G를 통하여 피고 B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F와 G 사이에 2019. 8. 14. 1억 5,000만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전득자인 피고 B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민법 제406조 제1, 2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1. 5. 18.경 G의 우체국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명세조회를 신청하였고, 2021. 7. 13.경 G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적어도 2021. 7. 13.경에는 F와 G의 인적 관계 및 둘 사이의 금전거래내역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2021. 8. 30. 이 사건 소 제기 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피고 B은 G를 통하여 교부받은 1억 5,000만 원이 F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님을 주장하며 다툰바, 원고는 적어도 피고 B이 2021. 11. 17. 자 준비서면을 통해 위 금액에 관하여 다툰 시점부터 F와 G 사이의 금전 거래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원고는 이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23. 11. 1. 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로 F와 G 사이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5,000만 원은 G가 F에게 대여한 금원을 돌려받았다고 볼 수도 있어 5,000만 원은 F가 G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5,000만 원 부분은 이 점에 있어서도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36쪽 제8행의 'B'을 'C'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6쪽 마지막행의 'F가'부터 제37쪽 제1행의 '거주하고 있었으므로,'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9쪽 마지막행, 제41쪽 제8, 11, 14행의 'D'을 모두 'E'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1쪽 마지막행의 '증거조차'부터 제42쪽 제2행의 '하였다.'까지를 '증거조차 없다(피고 E는 H나 H의 아들 O에게 이자로 매월 현금 50만 원 내지 7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2쪽 제6행의 '어렵다.'와 '그 외에도' 사이에 '피고 E는 H로부터 차용한 3억 원을 현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며 이는 P교회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3억 원은 교회 계좌가 아닌 피고 E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상환된 대출금 3억 원 또한 교회 명의가 아닌 피고 E 개인 명의의 대출금인바(을 제11호증의 2), 결국 위 돈은 피고 E 개인에게 귀속되었고 볼 수도

있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6쪽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들은 I공판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2019. 8. 14.에 시작되어 실제 세금이 부과된 것은 2019. 11. 11.인바, F가 각 증여행위 당시 2,577,421,280원이라는 고액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 하였고 당시 증여 금액 외에도 재산이 존재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모두 납부할 수 있을 거라 예상하였으므로 F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I공판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시기에 그 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까운 친인척에게 거액의 현금을 단기간에 이전한 점에 비추어 F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 47쪽 제6행의 '계속하거나'부터 제7행의 '거주하는 등'까지를 '계속하는 등'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8쪽 제6행의 '실제로'부터 제8행까지를 '실제로 위 각 금원을 지급받은 날인 피고 A, D은 2019. 8. 14.부터, 피고 B은 2019. 8. 16.부터, 피고 E는 2019. 8.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D,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며,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다만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를 확장하였으므로 그 확장된 청구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A, B, D, E에 대한 부분은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 및 피고 C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신동현

판사이진영

판사이선미